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09.1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09.08. 최재란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09.11.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499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 자구 정비(안 제1조).
- 나. ‘적용범위’를 ‘적용대상’으로 문구 변경(안 제3조).
- 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수립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라.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7조제1항 제5호).
- 마. 사회복지사 신분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 신설(안 제9조제2항).
- 바. 사회복지사 포상에 대한 사항을 표창 수여까지 확장(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0. 9. 11. ~ 2020. 9. 15.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뿐 아니라 표창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약자 혹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옹호자, 대변인 등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챙기기는 쉽지 않아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기도 함. 실제로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폭언이 39.3%, 폭행이 7.3%로 나타남.

【표 1】 소속별 사회복지사 폭언, 폭행 경험 현황

구분			폭언(언어적)		폭행(신체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시설사회 복지사	생활시설	보건복지부	37%	63%	10.6%	89.4%
		여성가족부	42.6%	57.4%	5.8%	94.2%
		소계	37.9%	62.1%	9.9%	90.1%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39.3%	60.7%	6.0%	94.0%
		여성가족부	23.0%	77.0%	4.3%	95.8%
		소계	35.4%	64.6%	5.6%	9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7.8%	22.2%	8.0%	92.0%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35.6%	64.4%	7.6%	92.4%
합계			39.3%	60.7%	7.3%	92.7%

출처 : 사회복지사협회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 한 언론매체에서¹⁾는 “올해 들어 울산, 부산, 김해, 창원에서 연이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둔기로 폭행하고,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컵으로 내리찍어 귀가 찢어지고, 안면을 가격당해 그대로 쓰러져 뇌진탕에 빠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기초연금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의 폭행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위험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사회복지공무원이 겪고 있는 폭언, 폭행 실태를 보도함.
 - 이를 종합할 때, 제도적 측면으로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은 높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상위법령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3조는 조문 취지에 맞게 조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음.

【표 2】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조 및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 안 제6조는 계획수립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려는 측면으로 사료됨. 참고로,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등에서도 3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음.

【표 3】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생략) 1. ~ 3. (생략)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신설한 것임.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익제보 등의 행위를 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문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사료됨.

【표 4】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7조 및 제9조)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생략) 1. ~ 4. (생략) <u><신설></u>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u><신설></u></p>	<p>제9조(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u>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 안 제10조는 문맥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뿐 아니라 표창 수여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음.

【표 5】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0조)

현	개 정 안
<p>제10조(포상) 구청장은 <u>사회복지사</u>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u>포상</u>을 할 수 있다.</p>	<p>제10조(포상) 구청장은 <u>사회복지사</u>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u>포상 및 표창</u>을 수여할 수 있다.</p>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중 하나로서 이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도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조례 개정 취지 및 개정하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